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9월 일 (제 회)

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김양희 의원의 6명
발의연월일	2012년 8월 22일

#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양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8월 22일

발 의 자 : 김양희, 강현삼, 김동환,  
김봉희, 박상필, 최병운,  
하재성(7명)

## 1. 개정이유

충북문화관 개관에 따라 위탁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며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작품의 구입 조문 삭제

- 작품의 구입에 대한 조문을 삭제(제12조 삭제)

### 나. 위탁기간의 조정(안 제13조)

- 현행 : 2년 기간에 필요한 경우 연장
- 개정 : 2년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연장

### 다. 이용자에 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제5호)

- 제2조제5호 : “이용자”란 시설내의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
라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

- ~의 규정에 따라 → ~에 따라
- 대한 → 대하여
- 범위 내에서 → 범위에서 등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나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다. 협의 : 문화관광환경국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였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.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## 충북문화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2조제2호 중 “시설”을 “문화관 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 또는 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이용자”란 시설내의 자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문화관의 시설”을 “시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①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6조 중 “제5조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호 중 “수탁업체가”를 “수탁기관이”로 한다.

제8조 본문 중 “전시시설 등”을 “시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시설 및 설비”를 “시설”로 한다.

제10조 제목을 “문화관 시설의 변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시설설치 또는 설비를”을 “시설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설

치·변경한 시설물 및 설비는”을 “변경한 시설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설물”을 “변경한 시설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대한”을 “대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하고,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를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“필요한 경우”를 “1회에 한하여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문화관의 시설물”을 “문화관 시설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”를 “취소하고자”로 한다.

① 도지사는 문화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, 수탁자가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제18조 중 “시설물”을 “시설의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략</li> <li>2. “시설사용”이란 제1호의 <u>시설</u>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</li> <li>3. “사용자”란 시설을 사용하는 <u>자</u>를 말한다.</li> <li>4. 생략 (신설)</li> </ol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“시설사용”이란 제1호의 <u>문화관 시설(이하 “시설”이라 한다)</u>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</li> <li>3. “사용자”란 시설을 사용하는 <u>사람 또는 단체</u>를 말한다.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“이용자”란 <u>시설내의 자료</u>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</li> </ol>
<p>제4조(시설사용) <u>문화관의 시설</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생략)</li> </ol>	<p>제4조(시설사용) <u>시설</u>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5조(사용허가) ① <u>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해 문화관의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</u>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생략</li> <li>③ <u>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</u>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</li> </ol>	<p>제5조(사용허가) ① <u>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</u>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작성·제출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(현행과 같음)</li> <li>③ <u>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</u>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</li> </ol>

<p>제6조(사용료) ① <u>제5조의 규정에 따라</u>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사용료) ① <u>제5조에 따라</u>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(사용료 감면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생략</li> <li>2. <u>수탁업체가</u>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</li> <li>3. 생략</li> </ol>	<p>제7조(사용료 감면) 생략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수탁기관이</u>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
<p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전시시설</u> 등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</li> <li>2.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때</li> <li>3. <u>시설 및 설비</u>의 안전관리를 위해할 때</li> <li>4.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</li> </ol>	<p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등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시설</u>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</li> <li>2.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경우</li> <li>3. <u>시설</u>의 안전관리를 위해할 경우</li> <li>4.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</li> </ol>
<p>제10조(문화관 시설물의 설비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<u>시설설치 또는 설비</u>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</p>	<p>제10조(문화관 시설의 변경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문화관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<u>시설</u>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.</p>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·변경한 시설물 및 설비는 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 후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관계자로 하여금 시설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시설물을 방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제11조(자료의 열람) ① 도지사는 문화관 소장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허가조건, 유·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작품의 구입) 문화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

제13조(작품의 기증) 생략

제14조(변상조치 및 손해배상) 생략

제15조(위탁) ① ~ ② 생략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,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변경한 시설은 도지사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 후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관계자로 하여금 시설확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 만료 후에도 변경한 시설을 방치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제11조(자료의 열람) ① 도지사는 문화관 소장자료에 대하여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허가조건, 유·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삭제

제12조(작품의 기증)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변상조치 및 손해배상)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위탁) ① ~ ② 생략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,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

<p>제16조(운영 및 관리비 지원) 문화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운영 및 관리비 지원) 문화관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
<p>제17조(수탁자의 책무)</p> <p>① ~ ② 생략</p> <p>③ 문화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수탁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수탁자의 책무)</p> <p>① ~ ② 생략</p> <p>③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수탁자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</p>
<p>제18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문화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,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문화관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, 수탁자가 위법·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
<p>② 생략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	<p>② 생략</p> <p>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
<p>제19조(양도 및 구조변경의 금지)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, 시설물 구조 또는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</p>	<p>제18조(양도 및 구조변경의 금지)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, 시설의 구조 또는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</p>

제20조(작품의 보관 및 관리) 생략

제21조(시행규칙) 생략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9조(작품의 보관 및 관리) (현행과 같음)

제20조(시행규칙) (현행과 같음)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